

서울고등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나2055376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15 선고 2023나20553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가합796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윤종민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정동근, 조호원

변론 종결 2024. 10. 11.

판결 선고 2024. 11. 1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3가합7967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1.부터 2024. 11. 15.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대상회사'라 한다)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감사인 피고의 남편 E과 함께 대상회사를 경영하다가 대상회사의 인수자를 찾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3. 7. 11.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상회사의 총 발행주식 85,000주(이하 '대상주식'이라 한다)를 5,0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대상주식의 매매 및 매매대금

1. 매매대금: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은 합계 5,000,000,000원(이하 '잠정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4.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확정된다.

2. 매매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계약금: 매수인은 잠정매매대금의 16%에 해당하는 800,000,000원을 계약 체결일에 매도인이 서면 통보한 은행계좌에 즉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 중도금: 매수인은 잠정매매대금의 36%에 해당하는 1,800,000,000원을 주식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지급하되, 200,000,000원은 2023. 7. 21.에, 500,000,000원은 2023. 9. 8.에, 1,100,000,000원은 2023. 9. 20.에 위 1)의 방식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잔금: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잠정매매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하고 4.에 따라 조정한 금액 중에서 1,000,000,000원은 2024. 10. 31.까지, 나머지 잔금은 2025. 3. 31.까지 매도인이 서면 통보한 은행계좌에 즉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4. 매매대금의 조정

1) 조정의 기준

(1) 부외부채 등에 따른 조정

본 계약 체결일 다음날부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당사자들 간에 서면으로 확인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매수인의 실사로 발견된 가공(허위)자산, 부외부채, 우발채무 등 대상회사의 순자산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감액한다.

2) 조정절차

(2) 매수인은 실사 결과 1)에 따른 매매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매매대금 조정사유와 조정요청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매도인에게 제시함으로써 매매대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은 위 (2)에 따라 제시된 감액요청서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감액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매대금의 조정금액을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조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매매대금의 조정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① 조정기간 종료일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1개의 회계법인을 선정한다.

위와 같이 선정된 회계법인의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50%씩 부담한다.

② 위와 같이 선정된 회계법인은 선정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미합의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매매대금의 조정금액을 산정한다. 이와 같이 산정된 조정금액은 당사자들을 최종적으로 구속한다.

【제3조】 실사

매수인은 2023. 7. 25.부터 매도인에 대하여 본건 사업의 실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의 수령일로부터 1주간 본건 사업에 관한 사업, 법무, 회계, 재무, 세무, 영업 등에 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거래종결

1. 거래종결

본건 거래의 종결은, 제7조에서 정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제2조에 따라 중도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 하에 다른 일시 및 장소에 거래종결을 실행할 수 있으며, 본건 거래의 종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날을 거래종결일이라고 한다.

【제5조】 경영참여 등 확약사항

2. 매수인의 경영참여: 본 계약의 체결일부터 거래종결일까지 각 당사자는 대상회사의 사업 운영에 있어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다.

【제6조】 진술 및 보장

1.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매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 및 거래종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9) 재무제표: 기준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및 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17) 자산: 대상회사가 보유한 매출채권은 대상회사가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실제로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대상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 중이지 않고, 매도인이 알고 있는 한 그러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없다.

【제9조】 해제

1. 상호 합의에 의한 해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일방당사자에 의한 해제

본 계약은 다음 각 항에 따라서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본 조에 의한 본 계약의 해제는 본건 거래의 종결 이전에만 가능하고,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그 사유를 가지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본건 거래의 종결 이후에는 당사자들은 어떠한 사유로든 본 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그러한 위반이 치유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또는 그 상대방 당사자가 해당 위반에 대하여 위 어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위반이 치유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의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본건 거래의 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본 계약에 따른 합의, 의무 기타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그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본 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일방 당사자 또는 대상회사에 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23. 7. 11. 피고에게 계약금 8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대상회사의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업연도에 관한 재무제표(갑 제2호증, 이하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상회복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거나, 원고의 취소권 내지 해제권 행사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상당액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받은 날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합의해제 원고는 2023.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 교부받은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의 자산가치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합의해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자체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이해하고 2023. 8. 3.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23. 8. 3.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다.

2)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내지 고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피고는 원고에게 신의칙상 대상회사의 재무상태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 등의 자산가치를 부풀린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3. 7. 26.자 이메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또는 이 사건 2024. 5. 7.자 답변서 또는 이 사건 2024. 9.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 내지 고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 내지 해제하였다.

3)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해제 피고는 2023. 7. 26.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수령을 거부한 후 2023. 7. 28.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23. 7. 26.자 이메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또는 이 사건 2024. 5. 7.자 답변서 또는 이 사건 2024. 9.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4) 약정해제사유를 원인으로 한 해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출채권 등의 자산가치를 부풀린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를 교부한 행위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조 2. 1)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인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진술 및 보장,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날의 영업시간 종료시까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조 2. 2)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는 2023. 9. 15. 대상회사에 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후 2024. 7. 4. 다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9조 2. 3) (1)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2023. 7. 26.자 이메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또는 이 사건 2024. 5. 7.자 답변서 또는 이 사건 2024. 9. 2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해제사유를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상회복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11,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의 지급기일인 2023. 7. 21. 피고에게 '원고는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충분한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제시받은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에 동의했다. 원고가 실사를 시작하기 전 피고와 대상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위 재무제표의 자산과 실제 자산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E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1차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서로 만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1차 중도금 지급을

보류하므로 양해해 주길 바란다. 2023. 7. 24. 월요일에 만나서 대화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② 피고는 2023. 7. 22. 원고에게 '원고의 말대로 대상회사의 자산에 관하여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에 관해 애초에 여러 번 설명하였다. 대상회사의 가치는 자산이 아니라 입찰경쟁력과 가능성에 있으므로 매매대금을 협상하는데 자산가치를 크게 감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고가 알고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로 계약진행을 미루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으니 월요일에 충분히 대화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는 2023. 7. 24. 피고를 만나서 2023. 7. 21.자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1차 중도금 지급 보류에 관한 양해를 구하며, 피고에게 '대상회사에 대한 원고의 실사 후 피고와 심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계약취소를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취소에 관하여 이번 주까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하였다.

④ 원고는 2023. 7. 25. 15:35경 피고에게 '어제 말한 사항은 계약 진행 여부와 관계없고, 계약이 진행 중이니 내일 아침에 출근할 예정이다. 계약에서 정한대로 2023. 7. 11. 이후 대상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같이 의논하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⑤ 피고는 2023. 7. 25. 18:47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계약이행을 어긴 상황이라 피고 측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원고의 마음이 변한 상태에서 계약을 돌이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제 미팅 때 이번 주까지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출근한다니 이해가지 않는다. 뒤처리에 충분히 협조할 의향은 있지만 계약을 이미 어겼으니 피고 측 입장이 정리되기까지 기다리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⑥ 원고는 2023. 7. 26. 새벽 무렵 피고에게 '2023. 7. 24. 원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다시 한 번 원고의 입장을 말한다. 원고가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피고와 사전 논의를 거쳐 해결방법을 협의한 다음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을 진행하자는 취지였고, 그러한 논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원고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서로 합당한 조치를 합의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피고가 대상회사에 대한 원고의 인수의사가 없다고 오해하였다면 내일 즉시 1차 중도금을 입금할 예정이니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자.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⑦ 피고는 2023. 7. 26. 오후 무렵 원고에게 '지금 와서 중도금 입금은 사양한다. 임의로 넣을 경우 반환하겠다. 그제 미팅 때 원고가 "아무래도 진행에는 서로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으니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계약을 진행하겠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당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피고는 "취소가 아니라 계약 의무 미이행이고 실효된 계약"이라고 거듭 말했다. 어제 카페에서도 분명히 원고가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해 놓고 또 난데없이 진행이라니? 어제 만났을 때 처음에 계약금을 몰취할 생각은 없었고 계약금 반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메일을 보내 이제야 중도금을 넣겠다며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계약금 반환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면 정중히 요청하고 우리의 처분을 기다려라. 그럴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책임전가와 사실왜곡 및 일방적 요구로 일관한다면 향후 법무법인을 통해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⑧ 피고는 2023. 7. 28. 원고에게 '원고는 2023. 7. 21.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23. 7. 24. 피고에게 유감표명과 함께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이행거절을 통지한 것이다. 이에 피고는 별도의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제를 통고한 바 있으며, 그 통지의 형식 등을 문제 삼을 것에 대비하여 본 메일로 다시 한 번 계약 해제를 통지한다. 그동안 좋았던 관계를 생각하여 위와 같은 전제를 인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주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⑨ 원고는 2023. 8. 3. 피고에게 '피고가 2023. 7. 28. 메일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800,000,000원을 2023. 8. 9.까지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의 계약해제 통지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⑩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8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3. 8. 1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합의해제 주장 판단

1)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304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원고는 2023. 7. 24. 피고에게 '대상회사에 대한 원고의 실사 후 피고와 심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계약취소를 고려해 달라.'라고 말하였다(이하 '계약취소 요청'라 한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23. 7. 11.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 등에 기초하여 대상주식의 매매대금을 5,000,000,000원으로 정하며, 다만 1차 중도금 지급기일(2023. 7. 21.)과 2차 중도금 지급기일(2023. 9. 8.) 사이의 기간으로서 2023. 7. 25.부터 1주일 동안 예정된 원고의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결과 위 재무제표보다 순자산의 감소가 발견되면 약정방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점, ② 원고는 1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23. 7. 21. 피고에게 실사를 시작하기 전이지만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의 자산과 실제 자산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1차 중도금 지급 보류에 관한 양해를 구하였고, 2023. 7. 24.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약취소 요청을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이번 주까지 위 요청을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은 점, ③ 원고는 그다음 날인 2023. 7. 25. 피고에게 계약취소 요청과 관계없이 계약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경영참여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마음이 변해 1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취소를 요청한 원고의 경영참여를 거절하며 위 요청에 관한 피고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받고, 2023. 7. 26. 다시 피고에게 계약취소 요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제안일 뿐 원고는 여전히 대상회사의 인수의사가 있으며 피고가 오해하였다면 내일 즉시 1차 중도금을 지급하겠다는 원고의 입장을 밝힌 점, ④ 원고의 계약취소 요청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는 요청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전제하고 있으며, 피고 역시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2023. 7. 24.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취소 요청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한 합의해제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법적성격을 가진 원고의 계약취소 요청을 원고의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받아들여 2023. 7. 28.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2023. 7. 28.자 해제의사표시'라 한다).

피고의 2023. 7. 28.자 해제의사표시의 내용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원고의 계약취소 요청에 따른 합의해제 청약 내용과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위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2023. 7. 28.자 해제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2023. 7. 28.자 해제의사표시는 그 내용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새로운 합의해제의 청약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2023. 8. 3.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조건으로 피고의 2023. 7. 28.자 해제의사표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내지 고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신의칙상 대상회사의 재무상태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매출채권 등의 자산가치를 부풀린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한 사실,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3,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교부받은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에는 매출채권 약 38억 원, 재고자산 약 58억 원, 자산총계 약 140억 원, 부채총계 약 107억 원, 자본총계 약 32억

원, 매출액 약 91억 원, 영업손익 약 14억 원, 당기순손익 약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대상회사는 최초로 2023년 사업연도에 관한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보고서에는 대상회사의 2022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매출채권 약 17억 원, 재고자산 약 22억 원, 자산총계 약 82억 원, 부채총계 약 107억 원, 자본총계 약 -24억 원, 매출액 약 84억 원, 영업손익 약 -21억 원, 당기순손익 약 -4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즉 원고는 2023. 6.경 D로부터 대상회사를 소개받고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대상회사를 방문하여 피고, E,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로부터 대상회사의 2022년 재무제표에 기재된 외상매출금 등 자산이나 부채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E에게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나중에 회계사가 대상회사를 실사할 때 그러한 사정이 면책사유나 감안사항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23. 7. 11. 피고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원고의 대상회사에 대한 실사 결과 위 재무제표보다 순자산 가치가 감소되면 매매대금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한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 판단

1)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2) 2023. 7. 24. 이루어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취소 요청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금 전액 반환을 조건으로 한 합의해제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데, 피고가 원고의 계약취소 요청을 이행거절 의사표시로 보아 원고에게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2023. 7. 28.자 해제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러한 피고의 2023. 7. 28.자 해제의사표시는 원고의 이행거절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나아가 피고가 미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23. 7. 28. 이루어진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4. 9. 27.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원고는 2023. 7. 26.자 이메일 또는 이 사건 소장 또는 이 사건 2024. 5. 7.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해제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2024. 9. 27.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상당액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금 수령일인 2023. 7.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재판장판사김우진

판사김영훈

판사김동현

1) 원고는 원상회복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서 합의해제 주장만 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기망을 원인으로 한 취소 주장, 고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 약정해제사유를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원고가 원상회복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주장함을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편의상 원고의 주장 순서대로 판단한다.